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4

발의연월일: 2020. 6. 29.

발 의 자:한정애·박성준·고영인

홍성국 • 정춘숙 • 박홍근

신현영 · 강선우 · 윤관석

최혜영 • 야전(비) • 전혜숙

이탄희 · 김홍걸 · 김남국

허종식 · 권인숙 · 오영환

장철민 · 이수진 · 강득구

김승남 · 이해식 · 윤후덕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출산 후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기간으로 배정해야하므로 최대 44일에 한해 동 제도를 사용할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양육하기"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로 한다.

제19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아 혂 행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제19조(육아휴직) 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 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 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 <u>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u> 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가 모성 보호를-----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 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